

# 서울특별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검 토 보 고

### 1. 제 안 경 위

- 발 의 자 : 김경훈 의원
- 의안번호 : 제1876호
- 발의일자 : 2024년 5월 27일
- 회부일자 : 2024년 5월 30일

### 2. 제 안 이 유

- 「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8조의2의 시행에 따라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의 피해방지 조항을 정비하고, 같은 법 시행규칙을 반영하여 인공구조물의 범위 및 설치기준을 규정하는 한편, 야생조류에 관한 규정은 별도의 조례로 지정하기 위해 중복된 부분을 삭제하고자 함.

### 3. 주 요 내 용

- 가. 인공구조물의 범위 및 설치기준을 규정함(안 제20조 제2항)
- 나. 야생조류에 관한 세부 규정을 삭제함(안 제20조 제3항 및 제4항 삭제)

### 4. 참 고 사 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
- 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(비대상사유서) 참조
- 다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 참조

## 5. 검토 의견

### 가. 개요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「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8조의2에 따라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의 피해방지 조항을 정비하고, 법 시행 규칙을 반영하여 인공구조물의 범위 및 설치기준을 규정하는 한편, 야생 조류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신설하기 위해 중복된 부분을 삭제하는 것임.

### 나. 검토의견

- 동 조례는 「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)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야생생물과 그 서식 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·관리하고 생물다양성을 증진시켜 사람과 야생생물이 공존하는 자연환경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2022년 10월 제정<sup>1)</sup>되었음.
- 제정 당시 2022년 6월 개정<sup>2)</sup>된 법의 내용을 일부 반영하여 제5장(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의 피해방지) 제20조 및 제21조에서 ‘인공구조물로 인한 피해방지 및 실태조사’<sup>3)</sup>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게 되었으나, 제20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는 “야생조류”에 대한 사항만을 정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피해가 많은 조류에 한하여 별도의 조례 제정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음.
- 이에 따라 본 조례안은 야생조류에 한해 세부적으로 충돌 방지를 규정하는 「서울특별시 야생조류 충돌 방지 조례안」이 발의되면서 중복된 부분을

1) 「서울특별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」 [시행 2022. 10. 17.]

[서울특별시조례 제8480호, 2022. 10. 17., 제정]

2) [시행 2022. 12. 11] [법률 제18908호, 2022. 6. 10., 일부개정]

3) 제20조(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의 피해방지), 제21조(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의 피해 실태조사)

삭제하고, 필요한 부분은 수정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음.

- 세부적으로 안 제20조제2항은 동 조례 제정 이후 마련된 법 시행규칙 제7조의2를 준용하여 ‘인공구조물’의 범위 및 설치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음.